

제 호

지정교육기관 지정서

1. 명칭:
2. 대표자 성명:
3. 소재지:
4. 지정교육의 내용:

「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」 제3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

직인